

2024년 공연예술창작주체 지원 공모 FAQ_2023.10.25.일 기준

<2024년 공연예술창작주체 지원> 사업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총 정리하였습니다. 지원신청서 작성 시, 아래 Q&A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10월 11일자 버전에서 추가된 내용은 파란색 글씨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차 사업설명회 진행 동영상의 링크도 첨부해드리니, 지원신청서 작성 시 참고해 주십시오.

- 1차 사업설명회 링크(지원신청서 작성 상세 안내) :

https://us06web.zoom.us/rec/share/d7Nw_usBkq7fzvGthHP-Wxo1Ts0kGJKI3beE3WQyOeP8NYZsCZwU_J87mphiZalC.yDkiuoJvqHN6RJqi?startTime=1696910986000

- 2차 사업설명회 링크(국가문화지원시스템 지원신청 및 파일 첨부 방법 등) :

https://us06web.zoom.us/rec/share/mLrj3xhI_btfhg3xXTIQn1V8Yljo0JCQAnLt5riixanOTQ1vkk5SCU8pMPGeFAiy.aoJAIRNWGrKrlSkj

순	구분	Q&A
1	사업유형	<p>①-1 여러 사업유형을 동시에 신청하고 싶은데, 창작주체 지원사업에 여러 건 지원이 가능한가요?</p> <p>⇒ 여러 유형을 한 지원신청서 안에 포함해서 하나의 지원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심의 단계에서 일부 유형만 선택적으로 지원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 '창작단체-축제', '창작공간' 두 개 유형으로 신청 → '창작공간' 유형만 선정될 수도 있음)</p> <p>또한 여러 유형을 동시에 신청하실 때는 신청하시는 사업들을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명을 정해서 작성해 주세요.</p> <hr/> <p>①-2 (창작공간) 창작공간으로 신청하는 공연장 공간에서만 기획공연(신작 등)을 진행하는 경우 창작공간 유형만 체크하면 되나요?</p> <p>⇒ 그렇습니다. 다만, 창작공간 유형은 '대관료 할인 운영(할인율 최소 50% 이상, 최소 대관 공연 10건, 최소 대관 단체 10단체)' 또는 '타 예술가 및 예술단체와의 공동기획 공연을 연3회 이상 개최'해야 합니다. 또한, Band2(1억원 이상~3억원 미만), Band3(3억원 이상~5억원미만)은 공연장 안전 관리 요원과 안내 요원 인건비를 필수로 편성해서 연중 운영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포함하면서 기획 공연(신작)을 추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p> <p>⇒ 지원신청 단계에서 대관할인 대상 단체와 공동기획 대상 단체가 미정이라도, 추후 공개적인 방식을 통해서 각 단체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단체 선정 방식은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p> <hr/> <p>①-3 (창작공간) 창작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공간 외에서 추진하는 공연이 있을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p> <p>⇒ 운영하고 계시는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경우 창작공간 유형으로, 외부에서 하시는 공연은 창작단체 유형으로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p>

순	구분	Q&A
2	지원신청자격	<p>②-1 (공통) 단체 이름으로 5년 넘게 활동하였지만,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기준으로는 5년에 미달하는데 지원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은 가능하나, 단체의 활동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포트폴리오 등)를 별도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p> <p>②-2 (공통) 단체로는 5년 경력이 부족하지만, 단체 대표자의 경력이 충분한 경우 단체 대표 명의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표자 개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체의 명의로 5년 이상의 활동 이력이 필요합니다.</p> <p>②-3 (공통) 다른 사업과 복수 지원 가능한가요? ⇒ 기본적으로 창작영역(창작의과정, 창작산실, 창작주체) 안에서는 복수 선정 시 1개 사업을 선택하셔야 하며, 지자체의 지역대표공연예술제,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공연장 지원사업과는 복수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나는예술여행, 국제교류사업, 인력지원 사업 등 정책영역의 사업들과는 복수로 선정 및 지원이 가능하나 단체당 3개까지로 제한됩니다.</p> <p>②-4 (창작공간) 부득이한 사유로 공연장 등록을 하지 못한 채 운영하고 있는데, 미등록공연장이더라도 지원신청을 할 수 없을까요? ⇒ 아쉽게도 미등록공연장은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현행 공연법상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라면 모두 공연장 등록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해당 법령에 따라 등록공연장만을 지원합니다. 공연자 및 스태프, 관객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공연하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p>
3	지원내용	<p>③-1 (공통) 단년도 / 다년도 병행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서 양식은 다년도 지원 양식만 있습니다. ⇒ 다년도 계획을 기반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단년도 지원을 원하시더라도 다년 계획으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p> <p>③-2 (공통) 심의과정에서 밴드 간 금액이 조정될 수 있나요? ⇒ 예산 심의 과정에서 Band 3에서 2로, 2에서 1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Band 1의 시작금액을 연간 2천만원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신청사업이 연간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계획하는 해당 금액으로 신청하시고 '지원 규모' 구분란에서 'Band 1'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심의에서 선정할 때에는 실제 계획하여 신청하신 2천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p> <p>③-3 (공통) 대표자 사례비 편성이 가능한가요? ⇒ 급여성 인건비(상용임금) 편성은 불가능하나, 대표자께서 프로젝트에서 수행하시는 역할이 있으실 경우 그에 따른 사례비 편성은 가능합니다. (ex. 연출 사례비 등)</p> <p>③-4 (창작주체) 공연 제작의 경우 신작, 재공연 모두 연간 1회 이상이 필수인가요? ⇒ 신작은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1년에 여러 편을 하셔도 되고, 3년 동안 한 편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재공연은 매년 1회 이상 제작하여 상연하셔야 합니다.</p>

순	구분	Q&A
		<p>③-5 (창작공간) 지원을 신청하려는 공연장에서 주로 하는 공연이 기초 공연예술 분야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p> <p>⇒ 공연 분야에 대한 질의사항의 경우,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단체에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공모 안내문에 최소한의 판단기준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모 안내문을 살펴보주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은 심의 기준 가운데 '신청단계의 예술활동 이력 및 사업 수행 역량' 항목에 대한 심의 위원의 평가의견에 따라 결정됩니다.</p> <hr/> <p>③-6 (창작공간) 창작공간 신청 시 필수 조건이 무엇인가요?</p> <p>⇒ 공연장 대관료를 포함해서 기존에 극장에서 대관하고 있는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최소 50%이상 할인해야 하며, 최소 대관공연 10건, 대관단체 10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할인 운영을 안하는 경우 공동 기획 공연을 연 3회 이상 개최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신 이후, 공간지원 유형 안에서 단체의 기획공연(신작/재공연)을 추진하실 수 있습니다.</p> <p>또한 Band2 이상일 경우 공연장 안전 관리요원 및 안내요원 인건비를 필수로 편성해서 연중 운영하셔야 합니다.</p>
4	지원신청서 작성	<p>④-1 (공통) 경상경비를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경상경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p> <p>⇒ 경상경비란 공연장을 운영하는 데 매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상근 운영인력 인건비(4대보험 가입 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인력에 한함), 공연장 및 연습실 임차료, 공공요금 등을 말합니다.</p> <hr/> <p>④-2 (공통) 사업 선정 이후에 공연 계획을 바꿔서 진행할 수 있나요? 참여 구성원은 변경하거나 추가해도 되나요?</p> <p>⇒ 지원신청 시 계획하신 작품은 심의에서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계획하셨던 공연을 하지 못하시면 해당하는 예산 전체에 대해 불인정 처리됩니다.</p> <p>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발생하는 사정에 따라 신청하실 때 제출하셨던 사업 참여 구성원 일부 변경과 추가는 가능하나, 프로덕션 구성원 또한 심의에서 주요 고려 사항이므로 구성원이 현저히 변경되는 경우 재심의 등 별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p> <hr/> <p>④-3 (공통) 다년간의 로드맵과 3개년 중장기 발전방안에는 어떤 것을 작성해야 할까요?</p> <p>⇒ 지원신청서 9페이지의 '중장기 비전과 운영 전략'은 다년도 지원을 하는 사업의 특성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적는 란입니다. 3개년 동안의 주제와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를 달성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3년간의 계획이 드러나야 합니다.</p> <p>⇒ 즉, 단년도 지원사업의 계획과 다르게, 3개년 동안 지원이 보장되면 2024년도에 공연을 진행하면서도 2025년도의 공연 프로젝트에 대한 준비를 하는 등의 활동(대본 제작, 작곡, 리허설 등) 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p> <hr/> <p>④-4 (공통) 페이지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반드시 25페이지 이내에 작성을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p> <p>⇒ 어느 정도의 가감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신청서 내의 심의기준 표는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p>

순	구분	Q&A
5	필수 제출자료	<p>⑤-1 5년 이상의 활동 실적은 어느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19년부터의 이력이 있으면 되나요?</p> <p>⇒ '19년부터 '23년까지의 실적이 있으면 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20~'22년 동안의 실적이 없으시다면 비워두시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한 무료공연, 초청공연 등 사유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링크, 언론 및 방송 리뷰기사, 티켓 판매 내역] 증빙자료가 없는 공연인 경우, 최대한 공연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링크를 기입 하시거나, 별도 자료를 첨부해주세요.</p> <p>⇒ 또한, 해외에서 진행하신 공연은 공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나 링크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세요.</p> <p>⑤-2 문화예술 지원기관 실적보고서는 어떤 양식으로 제출하나요? '23년도에 지원받은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면 실적보고서를 어떻게 제출합니까?</p> <p>⇒ 지원받으셨던 사업 정산하셨을 때 제출하셨던 실적보고서를 재가공 없이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3년도에 선정된 지원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사업이 완료된 그 이전년도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는 적어도 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는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p> <p>⑤-3 재해대처계획서는 필수제출인가요?</p> <p>⇒ 모든 유형 필수제출은 아니고 '창작공간' 유형은 필수제출이고, '축제운영' 유형 중, 공연장외 장소에서 1회당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입장한 공연 및 축제는 2023년 또는 가장 최근 행사의 재해대처계획서를 필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 의거 ※ 행사의 여러 회차 중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한 행사가 1회라도 해당될 경우 필수 제출하셔야 하며, 전체 평균 관람객 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행사 관람객 수는 지원신청서 작성 내용(사업계획, 지난실적 등 관람객 수)을 기준으로 판단하오니 해당되시는 단체는 제출 부탁드립니다. <p>⇒ 즉, 공연단체 또는 축제단체가 등록공연장에서만 공연을 하실 경우에는 재해대처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p> <p>⑤-4 안전관리계획서는 '축제운영' 유형만 필수제출인가요?</p> <p>⇒ '축제운영' 유형 중에서도 공연장 외 장소에서 1회당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입장한 공연 및 축제, 관객 수와 상관없이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축제(개최장소: 산 또는 수면 / 폭발성 물질 사용 축제)는 2023년 또는 가장 최근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서를 필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 및 시행령 제73조의9 의거 ※ 행사의 여러 회차 중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한 행사가 1회라도 해당될 경우 필수 제출하셔야 하며, 전체 평균 관람객 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행사 관람객 수는 지원신청서 작성 내용(사업계획, 지난실적 등 관람객 수)을 기준으로 판단하오니 해당되시는 단체는 제출 부탁드립니다. <p>⑤-5 '창작공간' 유형만 공연장 안전검사 결과보고서 및 개선 조치 완료 내역 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나요?</p> <p>⇒ 네 맞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최근 3년 내 안전검사 결과보고서 뿐만</p>

순	구분	Q&A
		<p>아니라 안전검사 결과 지적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 완료 내역 보고서를 모두 제출해주셔야 됩니다.</p> <p>⑤-6 '창작공간' 유형의 공연장 운영실적을 증빙할 자료 수가 많은 편인데, 각각의 파일을 첨부하면 될까요? ⇒ '창작공간' 유형뿐만 아니라 제출하실 실적 증빙자료가 많은 편이라면 개별 파일을 첨부하시는 것보다는 한글 혹은 워드 프로그램에 포스터, 팸플릿 등 제출하실 자료를 순서대로 첨부하시어 하나의 파일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⑤-7 제출자료는 어디에 첨부해야 하나요?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서 작성 페이지의 [첨부파일] 탭에 모두 첨부 해주시면 됩니다. 동일한 유형의 파일 - 공연 실적 정보 등은 하나로 폴더링하신 후 압축파일로 만들어서 제출해주시오.</p> <p>⑤-8 MacBook을 쓰고 있어 파일을 첨부했을 때 파일명의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어 나타납니다. ⇒ 파일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단, 최근 업데이트 등으로 인해 내용이 깨져보이는 경우도 있으니, 한글, 엑셀 문서를 pdf로 변환한 파일도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6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 (NCAS)	<p>⑥-1 주관기관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맞게 선택했는데 사업명이 여전히 지원 사업 목록에 보이지 않습니다. ⇒ NCAS 로그인 시 단체가 아니라 개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원신청하는 단체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p> <p>⑥-2 신청개요에 실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지정해야 하나요? ⇒ 사업기간은 '2024-01-01~2024-12-31'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p> <p>⑥-3 NCAS 총사업비에는 어떤 금액을 작성해야 하나요? 3개년 금액인가요? ⇒ 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한 '24년 예산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p> <p>⑥-4 지원신청서 제출을 마쳤는데 내용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원신청 마감일 이전까지는 지원신청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접속 후 '나의 지원신청현황'에서 지원신청서를 클릭하면 제출하신 지원신청 내용을 불러 오실 수 있습니다. 팝업창 우측 상단의 '회수' 버튼을 누르시면 수정 가능하며 수정하신 뒤에는 다시 '최종제출'을 해주셔야 정상 접수가 되는 점 유의해주세요.</p> <p>⑥-5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 시스템 관련 이용 문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577-8751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p>
7	지원심의	<p>⑦-1 서류 심의, 인터뷰 심의 일정 및 장소는 어떻게 될까요? ⇒ 서류 심의는 2023년 12월 초, 인터뷰 심의는 2023년 12월 11일~20일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며, 대면 인터뷰를 기본으로 하되, 비대면 인터뷰를 병행할 예정입니다.</p>